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72호
2. 발 의 자 : 고광민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0. 16.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앴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2. 정책 유효성 검증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3. 폐지 대상 정책 등의 심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4.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Ⅳ. 참고사항

1.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고광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372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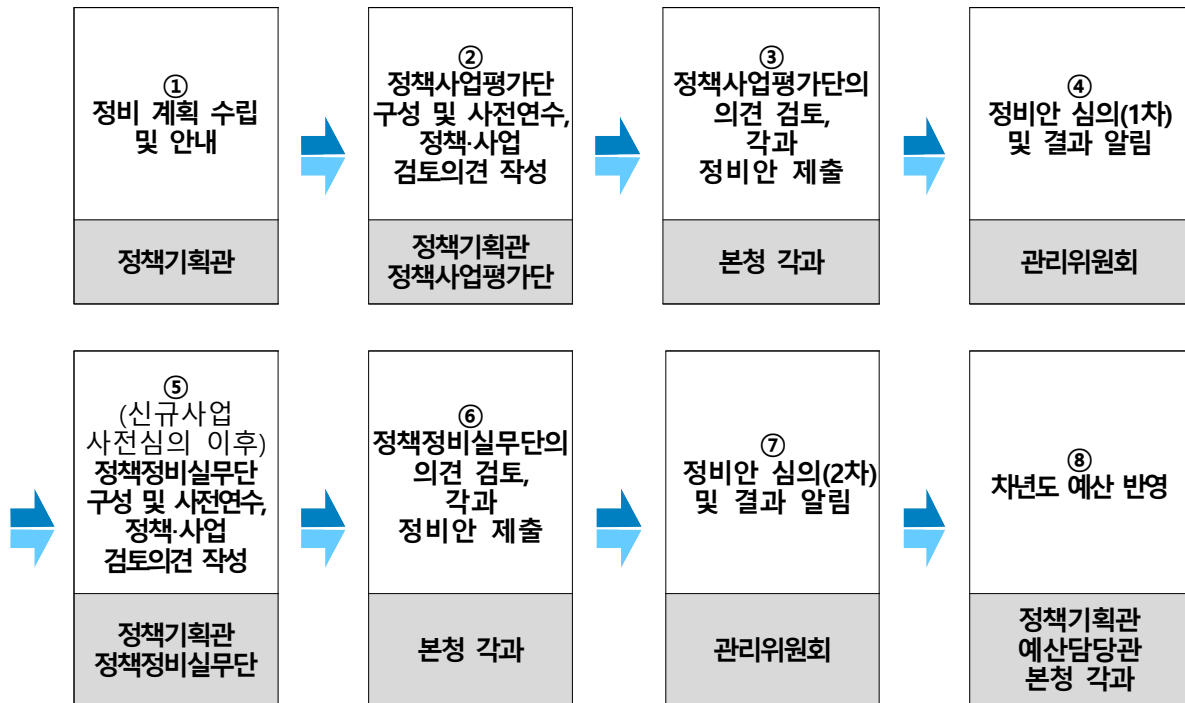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총량제 3.0계획(2022~2024)」에 따라 매년 정책·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정책·사업을 관리사업(정비 대상 사업)과 제외사업(필수 사업이나 교육청 유지 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폐지’, ‘개선(통합,보완,축소 등)’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정책·사업은 매년 정책에 대한 정책사업평가단의 검토를 거친 뒤 정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비안을 확정하고, 이후 정비안에 대한 정책정비실무단의 검토의견을 각과에서 재검토한 후 최종 정비안을 정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예산에 결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정비 절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관리는 각 부서가 목적사업별 성격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서 사업부서의 추진사업의 정비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고 실제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교육감의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이 정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정책·사업에 대한 검증 제도의 실제적 운영을 위한 절차, 검증 기준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4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절차와 효과를, 안 제5조는 정책 폐지의 권고 사항을, 안 제6조는 유효성 검증에 대한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10조까지는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사항을, 안 제11조는 교육감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실체적 내용에 따라 적절히 순서를 정하고 관련 지침¹⁾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구성 체계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책 유효성 검증 등에 대한 의견(안 제4조~안 제6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정책 유효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재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5조는 의회가 폐지 대상 정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위원회의 의결(안 제2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고(안 제1항), 이에 대해 교육감은 권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안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니다.

- 그리고 교육감 및 의회의 정책 폐지를 위한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기준은 안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교육감과 의회가 각기 다른 절차를 통해 교육청 정책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후, 유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폐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집행부의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있어 역할에 따른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경우 3년의 검증 제한기간은 사업의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의견(안 제7조~안 제10조)

- 안 제7조는 교육감 및 의회에서 폐지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한 폐지여부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안 제1항 및 제2항)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안 제3항)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잔여임기(안 제2항)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회의 개최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 규정은 교육감과 의회의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른 정책 폐지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폐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자의적인 정책

폐지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부칙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위한 대상과 절차 및 세부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 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2023.10.27.)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